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 다목, 제86조제7항 및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접수하는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 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감액요건

가. 계약관서

1) 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2) 6급 이하 우체국은 총괄국장이 판단하여 방문접수에 따른 인력·차량 등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가능

나. 기본 감액대상 우편물

1) 매월 50개 이상의 물량을 발송하는 경우

2) 분기(3개월), 반기(6개월)에 6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3) 한시적으로 특정기간에 5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4) 동일건물(단, 아파트, 주택단지 등 제외), 상가, 농장 등 다수의 발송자가 연합하여 월 500개 또는 업체별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5) 1회 또는 수차례에 걸쳐 10일 이내에 5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다. 추가 감액대상 우편물

1)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2)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발송하는 경우

3) 신규고객이 월 10,0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4) 중량 2kg이하이고 부피가 60cm이하인 초소형 택배물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발송하는 경우

5) 우편관서 물류창고 입주 고객이 발송하는 경우

6) 발송인이 직접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기본 감액범위

1) 중량 2kg, 크기(가로+세로+높이) 6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48% 미만

2) 중량 5kg, 크기(가로+세로+높이) 8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54% 미만

3) 중량 1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2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52% 미만

4) 중량 2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4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33% 미만

5) 중량 3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6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18% 미만

나. 추가 감액범위

감액요건의 추가 감액대상 우편물 요건 중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추가 감액

<추가감액 요건 및 감액 요금>

구 분	추 가 감 액 요 건	감액 요금	비고
우편 소통 기여고객	-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200원	한도액 400원
	- 발송인이 직접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100원	
	- 우체국 물류창고 입주고객 중 월 3,0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100원	
장기 이용고객	- 1년 이상 장기이용고객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월 10,0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월 30,0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100원 150원 200원	
신규고객	- 월 10,0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100원	
	- 월 30,0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200원	
초소형 이용고객 (2kg, 크기 60cm 이하)	- 부피가 2,500㎤ 이하의 초소형 물품을 월 1,0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100원	한도액 적용제외
	- 부피가 2,500㎤ 이하의 초소형 물품을 월 10,00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200원	

3. 기타사항

가. 총괄우체국에서 다량소포, 저 중량 및 소형소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감액범위 이상으로 감액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또는 본부에서 승인

부칙 <2011. 5. 30.>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호는 폐지한다.
2. (기존 계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 계약자에 관하여는 이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